

협력업체운영업무절차 개정(안)

현 행	개 정
제 9 조 (소집 및 심의) ① ~ ② (생 략) ③ 운영심의회는 심의사항에 대한 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의결하고, 가부 동수인 경우 위원장의 결정에 따른다. 다만, 제8조제3호의 ‘협력업체 해지·제재처분’의 경우에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 출석과 출석위원 2/3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9 조 (소집 및 심의)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운영심의회는 심의사항에 대한 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고, 가부 동수인 경우 위원장의 결정에 따른다. 다만, 제8조제3호의 ‘협력업체 해지·제재처분’의 경우에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2/3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15 조 (협력업체의 기본자격요건) ① 협력업체는 수시등록을 신청할 경우 다음 각 호의 기본자격요건을 모두 구비하여야 한다. 1. (생 략) 2. 금융감독원지정 외부 적격신용평가기관 또는 국외 신용평가기관에 의한 신용평가등급이 <u>BB</u>급 이상일 것 3. ~ 7. (생 략) ② ~ ③ (생 략)	제 15 조 (협력업체의 기본자격요건) ① 협력업체는 수시등록을 신청할 경우 다음 각 호의 기본자격요건을 모두 구비하여야 한다. 1. (현행과 같음) 2. 금융감독원지정 외부 적격신용평가기관 또는 국외 신용평가기관에 의한 신용평가등급이 <u>B</u>급 이상일 것 3. ~ 7. (현행과 같음)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 27 조 (협력약정의 정지 및 해지) ① 주관부서장은 협력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u>주관부서</u> <u>본부장의 승인</u>을 받아 <u>협력약정의 정지</u>를 업체에 통보함을 원칙으로 하며, 운영심의회 심의 및 전결권자의 승인을 받아 협력약정을 해지한다. 다만, 제1호, 제2호, 제16호, 제18호의 경우에는 운영심의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해지 이후에는 각 호에 따른 제재사유별 재등록	제 27 조 (협력약정의 정지 및 해지) ① 주관부서장은 협력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u>협력약정의 정지</u>를 업체에 통보함을 원칙으로 하며, 운영심의회 심의 및 전결권자의 승인을 받아 협력약정을 해지한다. 다만, 제1호, 제2호, 제16호, 제18호의 경우에는 운영심의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해지 이후에는 각 호에 따른 제재사유별 재등록제한 기간 동안 해당 업체에 등록

현행	개정
제한 기간 동안 해당 업체에 등록신청을 제한하여야 하며, 제5호 제13호, 제14호의 경우에는 위반사항이 중할 경우 영구제한을 할 수 있다. 1. (생략) 2. <u>부도, 휴업, 폐업 등으로</u> 정상적인 경영이 불가능한 경우 : 재등록제한 6개월(폐업의 경우는 제외) 3. ~ 18. (생략) ② ~ ⑩ (생략)	신청을 제한하여야 하며, 제5호 제13호, 제14호의 경우에는 위반사항이 중할 경우 영구제한을 할 수 있다. 1. (현행과 같음) 2. <u>부도, 휴업 등으로</u> 정상적인 경영이 불가능한 경우 : 재등록제한 6개월 (폐업의 경우는 제외) 3. ~ 18. (현행과 같음) ② ~ ⑩ (현행과 같음)
별표 1. 협력분야 및 소관부서(첨부1) 별표 2. 업체평가기준(첨부2)	별표 1. 협력분야 및 소관부서(첨부1) 별표 2. 업체평가기준(첨부2)
부 칙 1. (시행일) 이 절차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절차 개정시행일 현재 결재 진행 중인 사항은 종전의 절차에 따른다.	

첨부 1.
(현 행)
별표 1.

협력분야 및 소관부서

1. 설계엔지니어링 부문

기술분야	활용분야	협력분야	자격요건	소관부서
(생 략)				
<u>환 경</u>	<u>플랜트</u>	<u>환경현황조사</u>	- <u>환경부문의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분야 중 1개 이상 분야의 엔지니어링사업자로서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68조에 의거 제1종 환경영향평가업 등록자</u>	<u>환경기술 담당부서</u>
		<u>해양</u>	- <u>해양·수산부문의 해양분야 엔지니어링사업자</u>	
		<u>환경 및 화학설비설계</u>	- <u>환경부문의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 처리분야 또는 화학부문의 화공분야 중 1개 이상의 분야의 엔지니어링사업자</u>	
(생 략)				

비 고

1. 자격요건 중 엔지니어링사업자란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에 의한 해당전문분야의 엔지니어링 사업자의 신고를 필한 업체를 말하며, 기술사법 제6조에 의한 동일 기술범위에 등록된 기술사 사무소를 포함.

2. ~ 3. (생 략)

첨부 1.
(개 정)
별표 1

협력분야 및 소관부서

1. 설계엔지니어링 부문

기술분야	활용분야	협력분야	자격요건	소관부서
(현행과 같음)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현행과 같음)				

비 고

1. 자격요건 중 엔지니어링사업자란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에 의한 해당전문분야의 엔지니어링 사업자의 신고를 필한 업체를 말하며, 기술사법 제6조에 의한 동일 기술범위에 등록된 기술사 사무소를 포함.

2. ~ 3. (현행과 같음)

첨부 2.
(현 행)
별표 2.

업체평가기준

I. 설계엔지니어링 부문

1. (생 략)
2. 평가항목별 평가방법 및 세부기준
 - 가. (생 략)
 - 나. 신용도 평가는 다음의 기준에 따른다.
 - ① (생 략)
 - ② 신용평가등급별 평가점수는 다음과 같다.

신용평가등급	<u>AAA</u>	<u>AA</u> (+, 0, -)	<u>A</u> (+, 0, -)	<u>BBB</u> (+, 0, -)	<u>BB</u> (+, 0, -)	<u>BB미만</u> (소관 본부장 추천)	<u>BB미만</u>
평 가 점 수	35	33	31	29	27	25	-

- ③ ~ ⑤ (생 략)
- 다. ~ 사. (생 략)

II. ~ III. (생 략)

첨부 2.
(개 정)
별표 2.

업체평가기준

I. 설계엔지니어링 부문

1. (현행과 같음)
2. 평가항목별 평가방법 및 세부기준
 - 가. (현행과 같음)
 - 나. 신용도 평가는 다음의 기준에 따른다.
 - ① (현행과 같음)
 - ② 신용평가등급별 평가점수는 다음과 같다.

신용평가등급	$(+, \frac{AA}{0}, -)$ 이상	$(+, \frac{A}{0}, -)$	$(+, \frac{BBB}{0}, -)$	$(+, \frac{BB}{0}, -)$	$(+, \frac{B}{0}, -)$	<u>B</u> 미만 (<u>소관</u> <u>본부장</u> <u>추천</u>)	<삭 제>
평 가 점 수	35	33	31	29	27	25	-

- ③ ~ ⑤ (현행과 같음)
- 다. ~ 사. (현행과 같음)

II. ~ III. (현행과 같음)